행정안전부 예규 제00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16개 부·처·청 공동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 0. 0.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 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4조제3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 변경

라.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경보통제소장(부재 시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종합보고 실시

마. 재난경보 발령체계의 정비(제14조)

○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통보토록하는 내용 삭제

○ 지진해일 발생 시 시·군·구책임자 또는 시·도통제소장이 재난경보 발령전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발령 요청절차 마련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명시(제20조)

사.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절차 정비(제22조)

○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 재난예보의 발령은 재난경보의 전달요령 준용

3. 기타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5개 공동예규 기관과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행정안전부 예규 제 00 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5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1호 중 “각 부서”를 “각 부서, 소속기관”으로 러목 “(주)씨비에스”를 “(재)씨비에스”로 “교통방송 등”을 “교통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주)매일방송,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등”으로 4호 중 ""민방위 경보”는 평탄음과 파상음으로 구성된 "사이렌 울림”과 "음성방송”이 있으며 별표 1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를 ““민방위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로 5호 중 ““민방위 경보시설”을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시설로서”를 “시설로써”로 “경보단말(警報端末)과 재난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를 “TV자막송출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 등 민방위경보전달에”로 6호 중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시·군·구 경보책임자”라 한다)”로 8호 및 9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9.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2호 중 “공중공격이”를 “공격이”로 제3항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로 제3항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로 한다.

제5조 중 “같다.”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공군사령관”으로 “민방공훈련을”을 민방위훈련을”로 제3항 중 “요청받았을 때”를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은”을 “공군사령관은”으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로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에게“를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

장은“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로 제2항1호 중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 및 시·군 분배소“를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분배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은”을 “공군사령관은”으로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의 읍·면·동장에게”를 “그 지역의 읍·면·동장에게”로 제3항 중 “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해야”를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전달이 곤란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4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을”을 “경보시설을”로 제4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에서”를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로 제5항1호 중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책임자”로 “지역 군부대장이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를 “지역 군부대장이”로 2호 중 “관내 지방방송사(국)에”를 “관내 지방방송사(국),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로 제6항 중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시군구경보책임자″라 한다)는”을 “시·군·구 경보책임자는”로 “전달하여야 하며,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한다.”를 “전달하여야 한다.”로 1호 중 “경보를”를 “경보를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로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전달 또는 시·군 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를 “요청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2호 중 “제5항에 따른”을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

은”으로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 또는 읍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7항 중 “경보담당자로”를 “읍·면·동경보담당자로”로 제5항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제10조 중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을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은”을 “공군사령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로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경보를 발령한 경우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읍·면·동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로 제3항 “제6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8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를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으로 제3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본부 본부장(이하 "원자력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을 “한국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로 “요청할 경우에는”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으로 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 또는 심각단계(100만㎾ 이하)일 때

제4항 중 “발령한다.”를 “발령할 수 있으며,”로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경발령 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5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을 “시·도경보통제소장은”으로 제6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상황담당관)은”로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1호나목 중 “가스폭발”을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로 5호 중 “비상연락망”을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1호 중 “시·군·구 경보단말에”를 “경보단말에”로 2호 중 “시·군·구 경보사이렌에”를 “경보단말에”로 3호, 4호를 삭제하고, 제2항1호 중 “현지에서 자체적으로”를 “자체적으로”로 “음성으로”를 “별표4를 참고하여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로 2호 중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을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로 3호, 4호 삭제하고, 제3항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재난지역에 경보사이렌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단말 이외의 재난경보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제17조 중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한다.

제18조 중 “민방위경보시설을”을 “경보시설을”로 “재난경보를 발령한”을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으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재난 경보의 전달체계 및 운용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 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 경보"는 "재난 경보"로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①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햐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 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을 “자체교육계획은 1.20일까지, 교육실시결과는 12.20일까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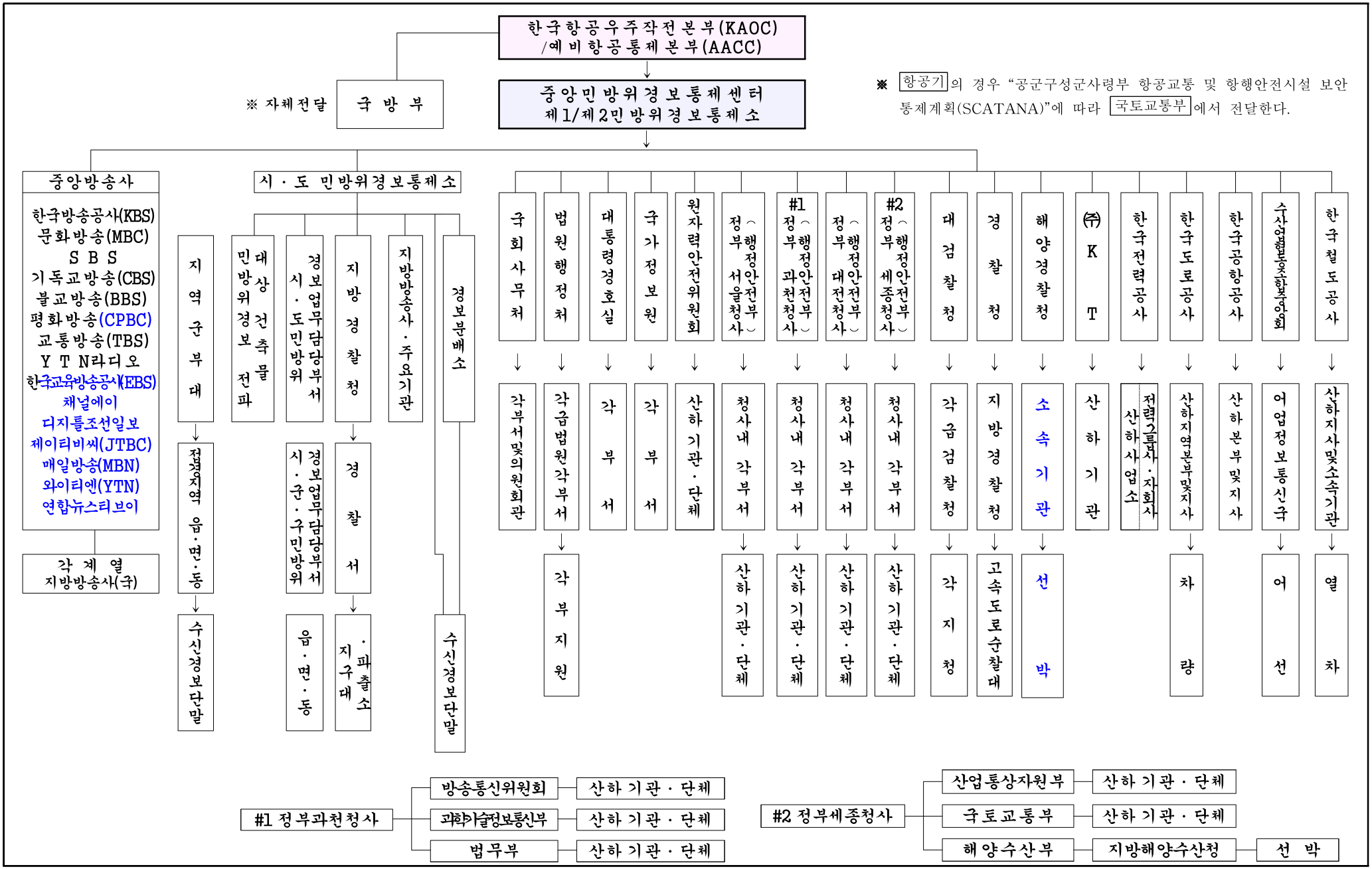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활용 요청 시에는”을 “활활용계획 통보는 활용할 일자의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로 1호 중 “활용사유”를 “활용일시 및 사유”로 3호 중 “일시”를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로 한다.

제23조 중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 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가. 야간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위험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행정관서 및 가까운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둡시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막힌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합시다.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출타 중 일 때는 일찍 귀가합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철탑, 전신주나 큰나무 밑으로 가지 맙시다.
○ 차량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물빼기를 합시다.
○ 등산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물이 불어 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않도록 합시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시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호우경보 발표 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 고립되었을 때에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시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태풍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맙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 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 주의보·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 재난(경계·위험)경보(화산재 낙하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화산재 낙하 전】

○ 문틈 및 환기구는 적신 수건으로 막고, 창문은 테이프로 막읍시다.

○ 낙수받이나 배수관을 지붕의 홈통으로부터 분리하고, 급수용으로 빗물수집 시설 사용시에는 빗물수집시설과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를 분리합시다.

○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환자는 실내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화산재 낙하 중】

○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합시다.

○ 불필요하게 실외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실외에 있을 경우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합시다.

○ 마스크나 손수건,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콘택트랜즈를 착용하지 맙시다.

○ 물에 화산재가 들어 간 경우 가라앉은 후 웃물을 사용하고, 채소는 잘 씻어 먹도록 합시다.

○ 화산재 등에 대한 재난방송을 청취합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 위기사태시 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한파로 /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경계 / 심각]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 [경계 / 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시 라디오방송문안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민방공경보 텔레비전 문자문안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나. 공습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다. 화생방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마. 해제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8.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가. 재난위험경보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실제 재난위험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나. 해제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별표 4]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가. 야간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유도와 차량운행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 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위험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 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모든 가족은 일찍 귀가합시다.

○ 집주위의 축대, 담장 등의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시다.

○ 철탑, 전주, 고목, 축대 등 위험시설물엔 접근하지 맙시다.

○ 가옥 내·외의 배수로를 확인하고 오물 등을 제거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합시다.

○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사전에 단단히 묶어 두거나 제거합시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등산, 낚시, 피서객은 즉시 하산하거나 신속히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시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맙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 주의보·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 위기사태

가. 재난경계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 지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 지역에 [한파로 / 폭염으로]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 ○ 지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경계 / 심각]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 경계(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국내원전 방사능 누출

가. 재난경계 · 위험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어 / 발생하여]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가. 재난경계 · 위험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 발생하여]

○○지역에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 /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 · 군 · 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민방공경보 텔레비전 문자문안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나. 공습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다. 화생방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마. 해제경보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9.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가. 재난위험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재난위험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나. 해제경보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별표 5]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4 : 기타 상황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5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 / ○ ○ ○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으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별표 6]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상황 4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상황 5 : 기타 상황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별표 7]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경보발령,
경보 미 수신지역은 자체경보를 발령하고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 사항을 전달 할 것.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